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재처분 받은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한〉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2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3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2. 18.
- (3) 회 부 일 : 2025. 2.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및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u>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②·③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④·⑤ (생략)	<u>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검토의견

□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¹⁾하는 제도로, 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3년마다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임.²⁾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요건³⁾을 모두 갖추면서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1)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수가 계산 시 15%의 가산율이 적용됨(종합병원은 10%, 병원급은 5%, 의원급은 0%).

2) 동 조항은 2010년 1월 시행되었으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11.12.16. 총 44개의 상급종합병원(지정기간: 2012.1.1.~2014.12.31.)이 지정되었음.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지정기간: 2024.1.1.~2026.12.31., 4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참고자료1]

3)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

요건⁴⁾까지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음.⁵⁾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요건 충족 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⁶⁾

-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②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③ 재평가 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호, 2025.6.21. 시행)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4)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5)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참고자료2]
- 6)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와 ‘소속 의료인 등이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7)(무면허 의료행위나 그 교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음.⁸⁾

- 이는 병원의 행정직원이나 의료기기 회사의 직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이른바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전문병원의 지정이 취소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었음.

□ 개정안은 현행법이 상급종합병원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 7)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24. 12.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일: 2025. 6. 21.] 제3조의5

있으므로, 지정제도의 도입 취지 및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사유도 전문병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규정은 2009년 개정을 통해 동시에 도입된 제도로, 당시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음.⁹⁾
-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 주기적 평가를 통한 재지정 등의 절차가 없어, 한번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아 왔고, 새로운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기득권 유지로 인하여 추가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었음.

□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 현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 제3조의4제4항제5호의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에 대하여 현행법 제64조¹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9)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 정부제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8.11.

10)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사유는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개설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 약국 개설자와의 담합행위(2차 위반부터) 등으로,¹¹⁾ 의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행위들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사유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보다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허가취소·폐쇄명령’의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¹²⁾

□ 다만,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서도 안 제3조의4제4항제6호(상급종합병원 소속 의료인 또는

-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4의2. 제33조제2항(주: 의료기관 개설권자)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주: 변경신고)·제7항(주: 개설장소)·제9항(주: 정관변경허가)·제10항(주: 법인명의 대여 금지), 제40조(주: 휴폐업 절차), 제40조의2(주: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제56조(주: 의료광고 위반)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참조. [참고자료3]

12)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므로, 영업정지 3개월보다 중한 처분임.

종사자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사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급종합병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¹³⁾ 전문병원에 비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의료계¹⁴⁾는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등¹⁵⁾을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거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는 중복 제재’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현행 제3조의4제3항¹⁶⁾의 개정 없이 제4항을 신설 하여,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복 기술되어 있으므로, 제3조의5 개정규정¹⁷⁾과 같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3) A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경우 직원이 381명인 것에 비해,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직원이 8,648명에 달함.

14)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5)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이하 생략)

16)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7)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제3조의5 개정에서는 기존에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곧바로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던 것을,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므로,¹⁹⁾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18)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제4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9)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제5항 개정 전후 조문비교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u>재지정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신 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상급종합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u>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 각 호의</u>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u>재지정할 수 있다.</u> ④ (개정안과 같음)

	<u>요건을 갖추지 못한</u> <u>것으로 확인된 경우</u> <u>4. 제1항 각 호의 요건</u> <u>을 충족하지 못하여</u> <u>제63조에 따라 시정</u> <u>을 명하였음에도 불</u> <u>구하고 이를 시정하</u> <u>지 아니한 경우</u> 5.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 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 상급종합병원에 소 속된 의료인, 의료기 관 개설자 또는 종사 자가 제27조제1항 또 는 제5항을 위반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	--	--

□ 둘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개정안 시행 전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병원의 규정과 동일하게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과조치에서는 전문병원의 경우와 달리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생각건데, 시정명령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문병원의 경우와 같이 개정안 시행 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일부 신중검토)

-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소속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아 상급종합병원 지정 유지가 부적절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직원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유로 지정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점, 지정유지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구체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대한의사협회(반대)

- 동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자율징계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상급종합병원 개설자가 아닌 소속 의료인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입법임.
- 특히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의료법령 위반사유를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복 제재임.

(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부 반대)

-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함.
-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개설자가 아닌 소속된 의료인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잉입법임.
- 이는 관련 단체들과 심도깊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대한치과의사협회(반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당 법률 개정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3년 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안은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 제도 간 형평성 고려 필요함.

(5)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의료 질 향상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1】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 [보건복지부 공고2023-894호]
---------------	---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5개)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6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 국	총 47개	

[참고 2]**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2) 선택진료과목(18):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교육기능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았을 것

3. 인력·시설·장비 등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 것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추어 것

사.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의 구성비율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4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2 이하일 것

구분	분류 기준	질병의 종류
전문진료 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일반진료 질병군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단순진료 질병군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지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7 이하일 것

다. 중증질환 진료 및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回送) 체계를 유도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진료실적을 갖출 것
라.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영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비고: 제3호사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참고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中 2.개별기준. 나. 의료기관이 위반한 경우
---------------	---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2)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5)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6)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신고 한 사항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7)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9)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경우 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경우 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1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1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5호	경 고
13)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병원에 당직의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5)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법 제63조	시정명령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아니하는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발급해주지 아니하는 경우 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8)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19)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20) 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26)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가) 법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나) 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28)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7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허가취소 또는 폐쇄
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8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